

의안번호	제801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의자 : 조성태,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1. 개정이유

- 청남대 입장료(할인대상, 연령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남대 순환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 입장료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4조, 별표 1)
- 입장료 할인대상 추가(안 제4조)
 -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환버스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관람자 →관람객(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람자**라 한다”를 “**관람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동**”을 “**미취학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6.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람자는**”을 “**관람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람자**”를 “**관람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람자**”를 “**관람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람자가**”를 “**관람객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순환버스의 운영) ① 소장은 축제기간 등에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 어린이란 중 “**7세~12세**”를 “**7세(취학)~12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장료)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u>관람자</u>”라 한다)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7세 이하의 <u>아동</u> 및 보호자 1인</p> <p>3. ~ 13.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 5. (생략)</p> <p><u><신설></u></p> <p>④ ~ ⑤ (생략)</p> <p>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생략)</p>	<p>제4조(입장료)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u>관람객</u>”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7세 이하의 <u>미취학아동</u> 및 보호자 1인</p> <p>3. ~ 1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p>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생략)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 ② (생략)

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의무실 설치) ① 소장은 관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②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의무실 설치) ① 소장은 관람객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순환버스의 운영) ① 소장은 축제기간 등에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
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
다.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입 장 료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및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어린이	3,000	2,000	<u>7세(취학) ~ 12세</u>
노 인	3,000	2,000	65세 이상
군 인 등	4,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 사회복지무요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남대 입장료(할인대상, 연령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남대 순환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전세버스 임차비용
 - 청남대 축제기간(4~5월, 10~11월 중) 주말 운영
 - 순환버스(45인승) 5대 임차
-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3. 관련조문

- 안 제4조(입장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 3의2.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 안 제18조(순환버스의 운영)
 - ① 소장은 축제기간 중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입장료 할인대상 추가

: 3,500명(현재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자)×0.1(기부자 중 10% 연 1회 방문 가정)×1,000원(할인액) = △350천원

'25년 : 3,500명×0.1×1,000원 = △350천원

'26년 : 3,500명×0.1×1,000원 = △350천원

'27년 : 3,500명×0.1×1,000원 = △350천원

'28년 : 3,500명×0.1×1,000원 = △350천원

'29년 : 3,500명×0.1×1,000원 = △350천원

- 순환버스 임차비용

: 전세버스(45인승) 650천원(1일 임차료)×5대×15일 = 48,750천원

'25년 : 650천원(1일)×5대×15일 = 48,750천원

'26년 : 650천원(1일)×5대×15일 = 48,750천원

'27년 : 650천원(1일)×5대×15일 = 48,750천원

'28년 : 650천원(1일)×5대×15일 = 48,750천원

'29년 : 650천원(1일)×5대×15일 = 48,750천원

○ 산출결과 :

- 연평균 350천원,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750천원 세입 감소
- 연평균 48,750천원,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43,750천원 세출 증가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입장료	△350	△350	△350	△350	△350	△1,750
주차료	-	-	-	-	-	-
시설사용료	-	-	-	-	-	-
세 출	48,750	48,750	48,750	48,750	48,750	243,750
재원 조달	-	-	-	-	-	-
자 채 수 입	소 계	-	-	-	-	-
	지방세	-	-	-	-	-